

2019년도 제2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28.(목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재화, 박정인,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6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00건(안전번호 제2019-156460호~156932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19-156460호~156461호는 다음 카페에서 영화 스크린샷 257장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해당 합법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할 경우 댓글도 함께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전번호 제2019-15646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어문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19-156463호~156472호는 자막공유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에서 추출한 자막파일(smi 파일)을 제공한 사안임. 복제·전송자가 우리말 번역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19-156473호~156478호는 자막공유 사이트에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막파일을 제공한 사안임. 권리자인 민원인의 협조를 통해 합법 영상물의 자막과 비

교, 분석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47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6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10쪽의 카페명, 14쪽의 밴드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이의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카페명, 밴드명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19-156460호~156932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2,500개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6460호, 15646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다음(daum) 카페 이용자가 2019. 9. 11. 개봉한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 (2019)'의 스크린샷 총 257장을 하나의 게시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카페를 제시하면서)여성만 해당 카페에 가입할 수 있고, 카페 회원 수는 2019. 11. 28. 현재 약 78만 명임. 카페 이용자가 2019. 11. 7. 제2019-156461호 게시물을 올렸고, 다른 카페 이용자가 2019. 11. 15. 제2019-156461호 게시물을 스크랩한 제2019-156460호 게시물을 올렸음. 제2019-156461호 게시물의 조회 수는 233,178회이고, 1,162개의 댓글이 달려 있음. 제2019-156460호 스크랩 게시물의 조회 수는 55,494회이고, 184개의 댓글이 달려 있음(2019.11.28. 기준).

영화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총 257장의 스크린샷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 등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본 건 영화의 스크린샷은 복제·전송자 자신이 작성한 부분에 비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주(主)를 이루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근 개봉한 본 건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257장의 스크린샷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할 경우 카페 이용자들이 작성한 댓글(184개, 1,162개)도 함께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함. 카페 이용자들이 작성한 댓글은 불법복제물등의 전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댓글 작성자들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156460호, 156461호 영화 스크린샷을 카페 게시물에 제공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하여 댓글은 남겨두고 게시물만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없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은 온라인상 게시물이 아닌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하나의 게시물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 다만 보호원은 URL 주소를 특정하여 게시물 단위로 시정권고를 하고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음. 전송 중단은 블라인드를 하거나 다른 페이지로 유도하기 때문에 나

중에 이의신청을 통해 게시물이 복구될 여지가 있음.

- D 위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임시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보호원도 저작권법 제133조의3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임시 조치 조항처럼 관련 근거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C 위원 : 관련 근거 조항을 도입할 필요 없이 보호원이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시정권고 집행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주면 됨. 보호원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거나 개정해야 함.
원게시물에 해당하는 안전번호 제2019-156461호는 어떤 등급에 한해서 볼 수 있는 게시물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6461호 게시물은 해당 카페에 가입만 하면 볼 수 있는 게시물임. 7등급부터 해당 게시물을 볼 수 있는데, 7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임.
- C 위원 : 등급이 높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시물인 경우 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성격으로 영리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봄. 반면 가입만 하면 볼 수 있는 게시물인 경우 회원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게시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해당 카페는 국내 최대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이 업로드되고 있음. 해당 카페는 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6460호, 156461호 총 257장의 스크린샷은 합법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나 게시물 자체에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할 경우 댓글도 함께 사라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본 건은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재논의가 필요함.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6460호, 156461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전체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D 위원 : 영화 스크린샷 게시물은 영화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합법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해당 안전건은 전체위원회에서 회부하자는 의견에 찬성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6460호, 156461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경고의 시정 조치 의견이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6462호는 권리자로 보이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인 '★★★' 이용자가 "나는 군단이다 소설 요청자료"라는 제목으로 어문저작물(소설을 캡처한 jpg.파일)을 판매한 사안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156462호 웹하드 사이트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646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어문 불법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 이견이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5646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6463호~156478호는 권리자가 요청하여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자막공유사이트인 '△△△△'의 이용자가 민원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해외영화의 자막 파일을 무단 전송하였음.
(해당 자막공유사이트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6463호~156472호의 총 14개 자막파일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에서 추출한 영어 또는 우리말 자막파일로 자막 파일 제작자가 우리말 번역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아니함.

해당 자막파일은 2018년 개봉한 영화의 BluRay, WED-DL에 내장된 자막파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안전번호 제2019-156473호~156478호의 6개 자막파일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됨.

무단 번역한 자막도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심제가 아닌 관계로 자막파일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막파일을 완전 삭제할 경우 자막파일 게시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원상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에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156463호~156478호 권리가 신고한 자막공유사이트 내 자막파일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 해당 자막공유사이트에서 자막파일이 어떤 형태로 업로드 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자막파일은 SRT파일이나 SMI파일로 업로드됨. 싱크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막이 재생됨. 순수한 학습 목적으로 번역한 경우라면 txt파일이나 워드, 한글 파일에 작성하였을 것임. SRT파일이나 SMI파일은 영상물과 결합하게 되면 보완재 역할을 하게 되어 불법복제물 유통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C 위원 : 전문위원의 설명에 덧붙이자면, SRT파일이나 SMI파일은 불법복제물 뿐만 아니라 합법복제물에도 사용될 수 있음. '☆☆☆☆☆☆'는 돌아다니는 자막 파일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D 위원 : 영화의 자막은 따로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자막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DVD나 BluRay에서 우리말,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등 나라별 자막을 추출하여 제공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번역하여 싱크를 맞춘 후 자막파일을 만들어 올리는 경우, 누군가가 번역한 자막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조금 수정하여 업로드 하는 경우로 나뉨. 보호원이 해당 경우를 하나씩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B 위원 : 어떤 영화가 제공될 때 한글 자막이나 번역본을 추가해서 배포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번역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대부분의 영화 배급계약서에는 Territory, Language, Subtitle, Dubbing에 관한 권리관계가 명시되어 있음.
- B 위원 : 자막파일은 나중에 영상저작물과 분리되어 존재하게 됨. 권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막파일을 배포하여 누군가 번역해서 써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예컨대, 미국에서 만든 영화를 영어 자막만 포함된 형태로 우리나라에 배포했다면 한국어 번역에 대한 권리는 일정 포기한 것으로 보아

야 하지 않은지?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지 아니함. 통상 언어별로 권리자를 배급계약서에서 정하고 있고, 계약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의 권리자인 해외 영화사가 번역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함. 번역된 자막을 2차적저작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임.
- B 위원 : 권리자가 있어도 번역된 자막파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 C 위원 :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음.
- D 위원 :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권리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다면 권리의 라이선스를 원권리자에게서 받아야 함. 예컨대, 미국에서 영화를 수입할 때 미국의 제작사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받을 때 계약서에 번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영화계에서 통용되는 IFTA 표준 계약서나 국제 영화배급계약서를 보면 디테일하게 정하고 있음.
- B 위원 : 원천적으로 권리를 막고 있다고 이해됨. 개인적으로 자막파일에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막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원 자막파일과 복제된 자막파일의 내용이 90% 이상 일치해야 하며, 영상과 싱크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함.
해외 권리자가 계약을 하거나 영상물을 유통할 당시 한국어 자막을 넣지 않는 경우 한글 자막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C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6473호~156478호의 권리자 허락 없이 번역한 자막파일은 전체위원회에서 따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6473호~156478호는 번역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권리자가 자막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두 자막파일을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보호원에서 권리자에게 메일을 보냈음. 권리자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분석한 후에 심의대상 자막파일이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복제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판단해야 할 것임.

- C 위원 :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산업적인 문제로 접근해보면, 할리우드 직배사들은 예전에는 웹하드에 영화 파일 자체가 올라가는 것을 막았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리말 자막파일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전략으로 바꿈. 자막파일이 없으면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영상이 아닌 자막파일을 만드는 사람을 건드리고 있음. 자막파일을 만드는 사람은 국내에서 20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리가 쉽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누가 번역을 하였는지 SRT파일이나 SMI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C 위원 : 예전에는 SRT파일이나 SMI파일에서 번역자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SRT파일이나 SMI파일에서 이름을 남기는 풍습이 사라져 번역자를 확인할 수 없음. 법적인 문제 이전에 사업자인 직배

사들이 자막파일 신고를 통해 행정기관을 자사의 사업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형사 고소가 남발되는 줄이기 위한 것이 시정권고 제도의 입법취지 중 하나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배급사들이 형사 고소 대신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국내의 대형 권리자나 해외 배급사들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저작권법에 따른 제도를 이용하고 있을 뿐임.
- C 위원 : 물론 모든 기업들이 그러한 것은 아님. 그러나 해당 권리자는 이전에 대규모로 자막파일을 만드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소를 했었음. 본인들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6463호~156472호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가 필요함. 안전번호 제2019-156473호~156478호는 해당 자막파일이 합법 저작물 수요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D 위원 : 합법 영상물에서 추출한 자막파일 사안은 데드카피에 가까워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무단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막파일 사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C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6463호~156472호는 합법 영상물에서 자

막만 추출한 것으로 복제·전송자가 2차적저작물을 주장할 여지가 없는 점, 해당 자막파일을 단순 불법복제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마땅함. 안건번호 제2019-156473호~156478호는 해당 자막파일에 대해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 바 전체위원회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음.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56463호~15647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156473호~156478호는 권리침해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결정을 유보하고 보완된 자료로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6479호~156932호는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게임, 만화, 출판,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영화 '조커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6574호는 보호원이 모니터링한 사안임. 2019. 10. 2. 개봉한 영화를 밴드 '○○○'에서 제공하였음. 해당 밴드 회원 수는 약 1,000명임. 해당 밴드는 누구나 검색해 찾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음. 밴드는 친목 도모, 폐쇄적 성격이 있을 수 있어 사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나, 해당 밴드는 기존에 계속 심의해오던 밴드임. 해당 게시물은 밴드 운영자가 업로드한 것으로 보임.

- C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6574호에 해당하는 밴드는 공개였다가 비공개로 전환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임. 이 안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에 이의가 없으나,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신고가 없는 한 검색되지 않는 폐쇄형 취지의 밴드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영화 '퍼펙트맨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19-156575호는 2019. 10. 2.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영화 '람보 : 라스트 워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19-156581호는 2019. 10. 23. 개봉한 최신 영화를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3개의 파일로 분할되어 게시됨. 심의위원회는 해당 밴드를 자주 심의한 바 있음.
(영화 '신문기자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19-156582호는 2019. 10. 17.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밴드 회원 수는 약 12,612명임.
(영화 '엔젤 해즈 폴른 (2018)'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19-156586호는 2019. 11. 13. 개봉한 최신 영화를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게임 '데드 오어 얼라이브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19-156901호는 2019. 3. 1. 출시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정품은 약 64,800원에 판매 중이며 배급사는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임. 웹하드에서 1,54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 B 위원 : 공식홈페이지에서 해당 게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최소한 확인 후 심의할 필요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위원님 말씀처럼 웹하드에서 trial 버전을 판매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음.
(게임 '월드 워 Z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56902호는 2019. 4. 16. 출시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정품은 약 35,000원에 판매 중이며 배급사는 포커스 홈 인터랙티브임.
- (음악 'Love poem (가수: 아이유)'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6928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18. 발매된 최신곡으로 앨범 'Love poem'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곡의 실연자인 아이유가 작사를 하였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앨범 'Love poem'의 수록곡 약 6개의 음원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음원파일은 최근 불법복제물로 다수 발견되고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데드카피인 안건번호 제2019-156479호~15693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6479호~15693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만화, 출판, 영상물, 게임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해당 안건들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며,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웹하드 등의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 D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임.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6479호~15693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6460호~156461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합법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나,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할 경우 댓글도 함께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함. 안전번호 제2019-156473호~156478호는 권리침해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결정을 유보하고 보완된 자료로 전체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함. 안전번호 제2019-156462~156472호, 제2019-156479~15693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불법복제물등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2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5.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